

# 2020 행정(지도)감사 결과

## 【 안 내 면 】

청렴·세상

### 기획감사실

# - 목 차 -

I. 감사개요 및 결과

II. 처분계획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III. 감사 처분요구서

# I.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기관 : 안내면
- 감사구분 : 행정(지도)감사
- 감사기간 : 2020. 10. 19. ~ 10. 23.(5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17. 10. ~ 2020. 9.
- 감사대상 : 행정업무전반
  - 군정 주요시책, 민원, 농지, 공사추진 실태
  - 예산·회계, 세입·세출, 물품, 서무, 보안 등 업무처리 실태

## 감사결과

□ 총지적건수 : 21건

※ 총무팀 11, 맞춤형복지팀 1, 산업팀 9

○ 행정상 조치 : 21건 (시정 8, 주의 13)

○ 재정상 조치 : 4건 1,473,000원

- 환 급 : 1건 25,000원
- 추 징 : 1건 19,000원
- 회 수 : 2건 1,429,0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II. 처분계획

### 행정상 조치

번호	담당부서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1	총무팀	주의	당직근무자 출·퇴근 시간 미준수
2		주의	공사 최종하자검사 미실시
3		주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및 계약서 작성 소홀
4		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홀
5		시정	관외 출장 여비 지출 소홀
6		시정	물품관리업무 소홀
7		주의	전입신고서 사후확인 업무 처리 소홀
8		시정 환급 25천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구 소홀
9		시정 추징 19천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소홀
10		주의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세입관련 증거서류 편철 소홀
11		주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수료 세입조치 소홀
12	맞춤형 복지팀	주의	통합사례관리 종결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13	산업팀	시정	농지원부 정비 소홀

번호	담당부서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14	산업팀	주의	2019년 쌀·밭 직불제 업무추진 소홀
15		주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홀
16		주의	축산농가 소독약품 배부 소홀
17		주의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18		주의	안내 현리마을회관 보수공사 환경보전비 미적용
19		시정 회수 1,315천원	오덕2리 세천 및 농로정비공사 외 4건 공사감독소홀
20		시정 회수 114천원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21		시정	이륜자동차 신고 관련 인지세 징수 소홀

### 재정상 조치

구 분	제 목	금 액(원)	비 고
총 계 ( 4건 )		1,473,000	
환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구 소홀	25,000	
추징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소홀	19,000	
회수	오덕2리 세천 및 농로정비공사 외 4건 공사감독소홀	1,315,000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114,000	

### Ⅲ. 감사 처분요구서

【 No 1 】

감사자 이문식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근무자 출·퇴근 시간 미준수

[현 황]

연 번	근무일	무인경비시스템		당직근무자		비고
		OPEN	CLOSE	직급(행위당시)	성명	
	8건					
1	2018.01.20.	-	17:54	행정8급	@@@	무단 퇴근
2	2018.02.10.	09:15	-	행정8급	@@@	무단 지각
3	2018.06.10.	-	17:50	행정9급	@@@	무단 퇴근
4	2018.06.16.	-	17:52	행정8급	@@@	무단 퇴근
5	2018.07.07.	09:12	-	행정8급	@@@	무단 지각
6	2018.10.20.	09:06	-	행정8급	@@@	무단 지각
7	2019.09.08.	-	17:56	사무운영7급	@@@	무단 퇴근
8	2019.10.12.	-	17:55	행정7급	@@@	무단 퇴근

※ 2017. 10. ~ 2020. 9. 보안업체(캡스) 자료 재구성

###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 당직근무의 구분에는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고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에 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안내면에서는 당직근무자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당직 근무를 하면서 총 8차례 무단 지각 또는 무단 퇴근을 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안내면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사 최종하자검사 미실시

[현 황]

- 안내 장계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외 11건[별첨]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6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각종 공사가  
완료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최종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조건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 안내면에서는 공사 준공 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있는 안내장계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외 11건 시설공사에 대한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최종하자검사 미실시 내역

공사명	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최종 하자검사 여부
계			12건
안내 장계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2016-04-22~2016-06-10	2년	부
안내 현리1리 마을안길정비공사	2016-04-22~2016-06-10	2년	부
안내 화인천 정비공사	2016-04-28~2016-06-07	2년	부
안내 정방리 소하천정비공사	2015-06-19~2015-07-27	3년	부
안내 오덕2(안지목) 세천정비공사	2016-06-09~2016-07-28	2년	부
안내 방하목리 교량확장 및 포장공사	2016-08-22~2016-10-10	2년	부
안내 월외리 농로 포장공사	2015-10-19~2015-11-23	3년	부
안내 월외리 용수로 정비공사	2015-10-19~2015-11-23	3년	부
안내 동대리 농로재포장공사	2016-11-14~2016-11-29	2년	부
안내 인포리 세천정비공사	2016-11-07~2016-12-06	2년	부
안내 월외리 배수로정비공사	2016-10-20~2016-12-08	2년	부
안내 현1리 배수로정비공사	2015-11-18~2015-12-15	3년	부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및 계약서 작성

[현 황]

사업명	설계금액 (도금액)	착공일	준공예정일	비고
안내 옥수수감자축제장 내 관정설치공사	7,000천원	2020.10.15	2020.11.13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책임은 입찰 또는 수의 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기준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원가계산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고,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무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용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안내면에서는 안내 옥수수감자축제장 내 관정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계약수량의 산출근거가 명시된 원가계산서(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작성 없이 수의계약 당사자의 1개 업체 견적서만을 적용하고 계약서 작성 없이 상기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홀

[현 황]

구분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주민자치센터 상하반기 운영결과보고서		주민자치위원 공고여부
	심의여부	계획제출 여부	심의여부	보고서제출 여부	
2017. 10.~	부	여	부	여	부
2018	부	부	부	여	여
2019	부	여	부	상반기 미제출	여
~ 2020. 9.	여	여	코로나로 운영 중단 [자치행정과-6720호(2020.2.24.)]		여

### 【위법부당내용】

-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운영), 제15조(설치)에 의하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하고, 읍면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위원회를 둠

-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아울러 같은 조례 제17조(구성 등)에 따르면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안내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2017·2018·2019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았고, 주민자치센터 2018년 연간 운영계획 및 2019년 상반기 운영결과보고서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 또한, 2017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 기 관 명 ] 안내면  
 [ 행정상 조치 ] 시정  
 [ 재정상 조치 ] 없음  
 [ 제 목 ] 관외 출장 여비 지출 소홀  
 [ 현 황 ]

지급일자	지급금액 (원)	지급명령 번호	적 요	증빙자료 제출(검토) 여부
총계	565,000		6건	
2018-11-01	61,000	366	2018년 10월 관외여비 지급	부
2019-03-05	127,000	103	2019년 2월 관외여비 지급	부
2019-05-02	41,000	217	2019년 4월 관외여비 지급	부
2019-07-04	49,000	370	2019년 6월 관외여비 지급	부
2019-10-02	189,000	483	2019년 9월 관외여비 지급	부
2019-11-07	98,000	534	2019년 10월 관외여비 지급	부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65호 2019.4.18.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훈령 제130호, 2020. 1. 30., 전부개정, 별표5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하는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사진·기타 입증자료 또는 출장복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검토 후 타당한 경우 국내여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출장공무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안내면에서는 위 현황에서와 같이 6건의 국내여비(관외)를 집행하면서 출장공무원에게 출장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지출서류에 서울행정시스템 상의 출장결재내역만 첨부하고, 국내여비 집행의 타당성 검토 없이 국내여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6건에 대하여 자체점검 후 여비 회수가 필요할 경우 회수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 기 관 명 ] 안내면

[ 행정상 조치 ] 시정

[ 재정상 조치 ] 없음

[ 제 목 ] 물품관리업무 소홀

[ 현 황 ]

○ 연도별 불용처분 실적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적	실시 횟수	건수	실시 횟수	건수	실시 횟수	건수	실시 횟수	건수
		2	129	1	1	2	44	1

○ 사용할 수 없는 물품(물품등록대장 등록)

( 단위 : 개 )

구입연도	물품명	보유 수량	비고	구입연도	물품명	보유 수량	비고
계		26					
1993	금고	1		2001	책상	1	
1994	책장	2		2001	제지용펀치	1	
1995	책장	1		2009	디지털카메라	2	
1995	회의용탁자	11		2010	디지털카메라	1	
1997	회의용탁자	3		2010	레이저프린터	1	
1997	캐비닛	1		2012	다기능복사기	1	

## 【위법부당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에는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9월) 이상 실시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 제18조에는 불용 결정한 물품으로서
  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안내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전입신고서 사후확인 업무 처리 소홀

[현 황]

(단위 : 건)

연도	계	거주여부확인 미표시	세대주 미확인	이장 미확인	담당공무원 미확인	날짜 미작성
계	119	79	9	5	13	13
2019	59	37	0	3	13	6
2020	60	42	9	2	0	7

### 【위법부당내용】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동법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신고확인의 사후확인 등)에 따르면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 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군수는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안내면에서는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 작성 시 거주여부확인 미표시 79건, 세대주 미확인 9건, 이장 미확인 5건, 담당공무원 미확인 13건, 날짜 미작성 13건 등 총 119건에 대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25,000원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구 소홀

[현 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신고일자	수수료	수납일자	면제사유	환금액	비고
계	5 명			25,000			<b>25,000</b>	
1	@@@	62.**.**	2018.05.11	5,000	2018.05.11	기초생활수급자	5,000	
2	@@@	39.**.**	2019.08.22	5,000	2019.08.22	기초생활수급자	5,000	
3	@@@	39.**.**	2019.08.23	5,000	2018.08.23	기초생활수급자	5,000	
4	@@@	52.**.**	2019.09.27	5,000	2019.09.27	기초생활수급자	5,000	
5	@@@	39.**.**	2019.12.11	5,000	2019.12.11	기초생활수급자	5,000	

### 【위법부당내용】

- 「주민등록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27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2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안내면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기초수급권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하나, 상기와 같이 5명에 대하여 총 2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25,000원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 기 관 명 ] 안내면

[ 행정상 조치 ] 시정

[ 재정상 조치 ] 추징 19,000원

[ 제 목 ]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소홀

[ 현 황 ]

(단위 : 원)

연번	신청일자	신청자	폐기물건명	규격	부과단가	수량	부과금액	정상부과액	차 액	비고
계	4건						27,000	44,000	19,000	
1	2019.7.2.	@@@	장식장	5단이상	2,000	6	12,000	24,000	12,000	
2	2020.3.5	@@@	침대 매트리스	2인	9,000	1	9,000	8,000	1,000	
3	2020.8.18	@@@	소파	3인	3,000	1	3,000	6,000	3,000	
4	2020.9.15	@@@	소파	3인	3,000	1	3,000	6,000	3,000	

### 【위법부당내용】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7조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또는 반입수수료를 별표2에 규정하고,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 4항에 의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별표2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안내면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폐기물 수수료 부과 기준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하나, 상기와 같이 총 4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총 19,000원의 수수료를 착오 부과·징수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19,000원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 기 관 명 ] 안내면

[ 행정상 조치 ] 주의

[ 재정상 조치 ] 없음

[ 제 목 ]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세입관련 증거서류 편철 소홀

[ 현 황 ]

- 2017 ~ 2020년 현재까지 인증기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입관련 증거서류(징수결의서) 미편철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장 계산증명, 제138조(준용규정)에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 중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12조에 의하면 증거서류는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당해 예산과목의 목별로, 기타의 것은 수입·지출별 종류별로 구분하고, 내용이 복잡한 것은 다시 적절하게 세분하여 각 구분별로 그 과목 등과 장수 및 금액을 쓴 구분지를 붙여 편철한 후 표지에는 총 장수 및 총 금액을 써 넣도록 규정함.

- 또한, 동 규칙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에 증거서류는 원본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원본과 틀림없다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 증명한 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18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에 세입관련 증거서류로 징수결정에 관한 결의서, 계약서 및 기타 징수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를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안내면에서는 인증기수입,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세입 징수결의서 등 증거서류를 2017년부터 현재까지 편철하지 않고, 문서 보관 상자에 보관하는 등 계산증명 관리를 소홀히 함

####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수료 세입조치 소홀

[현 황]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수료 세입조치 지연 내역 : 29건[별첨]

### 【위법부당내용】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5조에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연성, 불연성을 분리하여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생활 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할 때에는 판매업자에게 판매 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되,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규정을 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서는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금을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입금이 수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2019.07.01)]」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하여 세입금액의 성질에 따라 세입예산의 과목을 장·관·항·목별로 세부 분류하여 수입금이 수납된 그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 안내면에서는 2018년 1월 2일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000원 등 총 29건 14,685,700원의 수입금에 대하여 정당 납일일자보다 8일 ~ 24일간 지연 납입하는 등 쓰레기봉투수입과 대형폐기물 등 수입금에 대한 세입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수료 세입조치 지연 내역

발생일자	세입과목	금액(원)	정당 납입일자	실제 납입일자	납입 지연일수	비고
계	29건	14,685,700				
2018.01.02.	쓰레기처리봉투	5,000	2018.01.03	2018.01.17	14	
2018.01.02.	쓰레기처리봉투	5,000	2018.01.03	2018.01.17	14	
2018.01.02.	쓰레기처리봉투	5,000	2018.01.03	2018.01.17	14	
2018.01.02.	쓰레기처리봉투	5,000	2018.01.03	2018.01.17	14	
2018.01.04	쓰레기처리봉투	249,000	2018.01.05	2018.01.17	12	
2018.01.22	쓰레기처리봉투	3,000	2018.01.23	2018.02.07	15	
2018.01.22	쓰레기처리봉투	1,000	2018.01.23	2018.02.07	15	
2018.02.07	쓰레기처리봉투	265,400	2018.02.08	2018.02.28	20	
2018.03.16.	쓰레기처리봉투	703,760	2018.03.17	2018.04.10	24	
2018.04.10.	쓰레기처리봉투	200,000	2018.4.11	2018.04.30	19	
2018.04.18	쓰레기처리봉투	277,300	2018.04.19	2018.05.04	15	
2018.05.31	쓰레기처리봉투	432,500	2018.06.01	2018.06.22	21	
2018.07.10	쓰레기처리봉투	314,400	2018.07.11	2018.07.30	19	
2018.07.18	쓰레기처리봉투	137,500	2018.07.19	2018.08.09	20	
2018.08.09	쓰레기처리봉투	265,500	2018.08.10	2018.08.20	10	
2018.10.04	쓰레기처리봉투	195,900	2018.10.05	2018.10.25	20	
2018.10.25	쓰레기처리봉투	241,900	2018.10.26	2018.11.19	23	
2018.01.02	대형폐기물	2,000	2018.01.03	2018.01.17	14	
2018.01.22	대형폐기물	6,000	2018.01.23	2018.02.07	14	
2018.01.24	대형폐기물	6,000	2018.01.25	2018.02.07	12	
2018.02.27	대형폐기물	13,000	2018.02.28	2018.03.15	15	
2018.03.06	대형폐기물	6,000	2018.03.07	2018.03.27	20	
2018.03.13	대형폐기물	6,000	2018.03.14	2018.03.27	13	
2019.01.15	쓰레기처리봉투	310,000	2019.01.16	2019.01.28	12	
2019.04.23	쓰레기처리봉투	361,000	2019.04.24	2019.05.13	11	
2019.05.16	쓰레기처리봉투	833,100	2019.05.17	2019.05.29	12	
2019.06.14	쓰레기처리봉투	5,613,440	2019.06.17	2019.07.02	15	
2020.04.29	쓰레기처리봉투	3,953,000	2019.05.04	2019.05.12	8	
2020.07.31	쓰레기처리봉투	269,000	2020.08.03	2020.08.11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통합사례관리 종결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현 황]

성명	생년월일	통합사례관리 종결일	1차 사후관리	2차 사후관리	비고
13명					
@@@	50.**.**	18.04.05.	18.06.04.	20.01.16.	기간초과
@@@	39.**.**	18.04.05	18.06.22.	20.01.17.	기간초과
@@@	47.**.**	18.04.05.	18.05.08.	20.01.17.	기간초과
@@@	71.**.**	18.03.28.	18.05.01.	20.01.31.	기간초과
@@@	44.**.**	18.03.26.	18.05.03.	20.01.15.	기간초과
@@@	56.**.**	18.03.19.	18.06.04.	20.01.20.	기간초과
@@@	70.**.**	18.02.06.	18.04.19.	20.01.16.	기간초과
@@@	33.**.**	18.02.06.	18.04.17.	20.01.16.	기간초과
@@@	52.**.**	18.06.27.	18.08.16.	18.11.30.	6개월 미만
@@@	54.**.**	18.06.27.	18.08.16.	18.11.30.	6개월 미만
@@@	43.**.**	18.06.20.	18.08.31.	18.11.30.	6개월 미만
@@@	76.**.**	18.06.19.	18.08.23.	18.11.30.	6개월 미만
@@@	61.**.**	18.08.01.	19.01.08.	19.08.29.	기간초과

## 【위법부당내용】

- 「2017~2019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대상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고, 종결 이후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위기상황의 재발 예방을 위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읍면 사례관리자가 종결 후 6개월 단위로 1회씩 2번 실시하여야 함
- 그러나, 안내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2차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나 종결 후 6개월 이내에 1차·2차 사후관리를 모두 실시하거나, 2차 사후관리를 종결 후 1년이 지난 후에 실시하는 등 총 13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농지원부 정비 소홀

[현 황]

구 분	정비대상 건수	비 고
계	58	
소유권변동	12	
경작미달자	26	
임차기간 종료	20	

### 【위법부당내용】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은 농지의 소유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안내면에서는 상기와 같이 농지원부를 정비하지 않고 있는 등 농지원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위 현황의 58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 기 관 명 ] 안내면

[ 행정상 조치 ] 주의

[ 재정상 조치 ] 없음

[ 제 목 ] 2019년 쌀·밭직불제 업무추진 소홀

[ 현 황 ]

주 소	신청농가	대상필지	신청구분	비고
계		3필지		
안내면	@@@	안내면 동대리	쌀 직불제	
안내면	@@@	안내면 동대리	쌀 직불제	
안내면	@@@	안내면 오덕리	밭 직불제	

### 【위법부당내용】

- 쌀·밭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신청 농지가 신규필지인 경우 쌀직불인 경우 1998 ~ 2000년 기간, 밭직불인 경우 2012 ~ 2014년 기간 중 해당 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경작자가 신청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빙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하나,

- 안내면에서는 2019년도 쌀·밭직불제 업무 추진 중 각 직불제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를 제출받아 직불제 대상 농지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3필지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직불제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소홀

[현 황]

신청인		신청일자	발급일자	위법부당사항	비고
주소	성명				
계	5명				
충북 옥천군 안내면	@@@	2019.2.14.	2019.2.14.	주민등록등본	
대전광역시 중구	@@@	2019.6.11.	2019.6.11.	주민등록등본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0.5.25.	2020.5.25.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0.5.25.	2020.5.25.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전광역시 동구	@@@	2020.8.3.	2020.8.3.	부동산매매계약서	

## 【위법부당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 「농지법」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동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 안내면에서는 상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소홀히 하였음

##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축산농가 소독약품 배부 소홀

[현 황]

구 분	약품명	배정량	비고
축산 방역 소독약품	그린필드	150	구제역

### 【위법부당내용】

- 2019년 구제역 등 축산질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구제역 소독  
약품 그린필드를 배부하였음
- 안내면에서는 자체 배부계획을 수립하고 약품 인수 후 즉시 해당약품을  
축산농가에 배부하고 배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배부계획 수립은  
적절히 추진하였으나, 축산 농가의 경영 규모에 따라 축산 농가별·축종별

소독약품을 전량 배부한 후 배부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소독  
약품 배부에 소홀히 하였음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방곡리마을안길 정비공사	10,367	2020.4.7	2020.4.8	2020.4.27	@@@	폐기물 신고필증
도촌리마을안길 정비공사	16,598	2020.7.24	2020.7.29	2020.9.28	@@@	폐기물 신고필증

###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침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함
  
-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안내면에서는 방곡리마을안길정비공사의 1건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폐기물신고필증을 제출받지 않았고, 보완 지시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안내 현리마을회관보수공사 환경보전비 미적용

[현 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설계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안내현리마을회관 보수공사	19,620	2018.8.23	2018.8.24	2018.9.21	@@@	

###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방지등 건설공사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안내면에서는 안내현리마을회관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공사의 환경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원가계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315천원

[제 목] 오덕2리 세천 및 농로정비공사 외 4건 공사감독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계약자	과다 품목	▲금액
계	5건		69,842			1,315
오덕2리 세천 및 농로정비공사	2019.4.18	2019.4.22 ~2019.6.20	12,845	@@@	식생블럭기초 거푸집	235
정곡리농로개설공사	2019.10.28	2019.10.30 ~2019.12.6	15,466	@@@	식생블럭기초 거푸집	376
오덕2리마을안길 정비공사	2019.3.6	2019.3.8 ~2019.4.24	14,832	@@@	합판거푸집 및 면목	387
용촌리 배수로정비공사	2020.4.6	2020.4.10 ~2020.5.15	9,765	@@@	식생블럭기초 거푸집	126
정곡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2020.3.9	2020.3.12 ~2020.4.14	16,934	@@@	레미콘소운반	191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공사감독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계약서, 기타관계 서류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감독에 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도서와 현장실정이 일치하지 않거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시공할 경우 재시공 또는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경리관에게 보고 후 변경계약을 하여 시공토록 해야 함’ 에도,

### 1. 오덕2리 세천 및 농로정비공사 부적정 사항

- 안내면에서 (주)\*\*산업건설 \*\*\*와 2019.4.18. 도급 계약하고, 2019.4.22. 착공하여 2019.6.20. 준공함에 있어서,
  - 옹벽블럭기초공사를 위하여 설계에 계상된 합판거푸집(24㎡)을 시공하지 않고 유로폼거푸집(24㎡)으로 시공하였음에도 과다 계상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235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 정곡리농로개설공사 부적정 사항

- 안내면에서 (주)\*\*이엔씨 \*\*\*와 2019.10.28. 도급 계약하고, 2019.10.30. 착공하여 2019.12.6. 준공함에 있어서,
  - 옹벽블럭기초공사를 위하여 설계에 계상된 합판거푸집(38㎡)을 시공하지 않고 유로폼거푸집(38㎡)으로 시공하였음에도 과다 계상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376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3. 오덕2리마을안길정비공사 부적정 사항

- 안내면에서 \*\*산업건설(주) \*\*\*와 2019.3.6. 도급 계약하고, 2019.3.8. 착공하여 2019.4.24. 준공함에 있어서,
  - 안길포장을 위하여 설계에 계상된 합판거푸집(8㎡) 및 면목(40m)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과다 계상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387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4. 용촌리 배수로정비공사 부적정 사항

- 안내면에서 \*\*건설(주) \*\*\*와 2020.4.6. 도급 계약하고, 2020.4.10. 착공하여 2020.5.15 준공함에 있어서,
  - 옹벽블럭기초공사를 위하여 설계에 계상된 합판거푸집(13㎡)을 시공하지 않고 유로폼거푸집(13㎡)으로 시공하였음에도 과다 계상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126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5. 정곡리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부적정 사항

- 안내면에서 (주)\*\*이엔씨 \*\*\*와 2020.3.9. 도급 계약하고, 2020.3.12. 착공하여 2020.4.14. 준공함에 있어서,
  - 부대공의 콘크리트포장을 위한 레미콘 소운반이 설계에 계상되었으나 확인결과 레미콘 소운반(18㎡)을 이행하지 않았음(현장여건 상 레미콘

직접 타설 시공)에도 과다 계상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191천원  
(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안내면장은 5건 공사에 대하여 1,315천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 기 관 명 ] 안내면

[ 행정상 조치 ] 시정

[ 재정상 조치 ] 회수 114천원

[ 제 목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 현 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미정산 환경관리비
정곡관정보수공사	11,700	2018.4.30	2018.5.2	2018.5.9	@@@	114

###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의 방지등 건설공사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산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안내면에서는 정곡관정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 및 정산 절차 없이 제경비 포함 총 114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안내면장은 정곡관정보수공사에 대하여 114천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년 안내면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  
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안내면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신고 관련 인지세 징수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연번	접수일자	신청인		구비서류	미징수 인지세	비고
		주 소	성 명			
계	4건				12,000	
1	2018.03.20	안내면	@@@	양도증명서	3,000	
2	2018.04.18.	안내면	@@@	이륜자동차 제작증	3,000	
3	2018.09.20	안내면	@@@	양도증명서	3,000	
4	2018.10.10	안내면	@@@	양도증명서	3,000	

【위법부당내용】 「건설기술진흥법」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와 제101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와 그 첨부 서류를 「자동차관리법」 제77조 및 「옥천군 사무의 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 「인지세법」 제3조에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8조 1항의 규정 및 제10조에 의거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의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하나,
  - 안내면에서는 4건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 제작증 및 양도 증명서 상에 수입인지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이원면장은 4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